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2498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1. A
	2. B
피 고	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변 론 종 결	2017. 5. 11.
판 결 선 고	2017. 7. 13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5. 7. 10.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재산세(건축물분) 각 58,758,770원의 부과처분 중 48,329,560원[1]을 초과하는 부분, 지방교육세 각 10,840,180원의 부과처분 중 9,665,9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1)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'52,887,360원'은 오기로 보이므로(변경된 청구원인, 2017. 3. 21.자 사실조회회신 참조), 이와 같이 정정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들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지하 4층, 지상 8층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의 각 1/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536.39㎡ 부분(이하 '이 사건 영업장'이라 한다)이 구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.목에서 정한 나이트클럽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.목에 따른 중과세율(1000분의 40)을 적용하여 2015. 7. 10. 원고들에게 2015년도 재산세(건축물분) 각 58,758,770원, 지방교육세 각 10,840,180원을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. 8. 3.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. 10. 7. 기각되었고, 2015. 12. 17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. 9. 30. 기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3, 5호증, 을 제1, 3, 7, 11, 14호증(가지번호 포함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영업장은 2013년 이전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 2~4층 소재 나이트클럽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영업장이 나이트클럽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 설령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이 사건 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업장 중 창고, 조리실, 직원 휴게실은 공유시설이므로 중과세율과 일반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안분되어야 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(1) 인정사실

(가) 원고 A는 2000. 11. 28.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~4층에서 'D'(이하 '이 사건 나이트클럽'이라 한다)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.

(나) 원고 A의 처인 원고 B는 2003. 12. 26.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전체에 관하여 'E노래주점'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. 위 지하 1층 이 사건 영업장과 지하 2층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총 3개의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층간 이동이 자유로웠는데,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12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노래방 시설, 소파, 탁자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. 피고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영업장을 포함한 지하 1층 전체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시설면적에 포함시켜 중과세하였다.

(다) 원고들은 시설공사를 하여 2013. 6. 27.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 1층 778.22㎡ 부분에서 'F'(종전의 상호인 E노래주점을 변경)이라는 노래주점을 운영하였고, 그 이후인 2013. 9. 5. 'G', 2016. 8. 24. 'H'로 상호를 변경하였다. 피고는 2013년경 위 778.22㎡ 부분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의 형태가 없어졌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.

(라)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2013년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전체를 노래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 피고는 2015. 8. 14. 현장조사 결과 '이 사건 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실체를 갖춘 객실 12개로 영업 중이고,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구별되게 출입구를 막은 것이 아니라 지하 1~4층까지의 건축물대장 평면도상과 동일한 형태로 비상출입구·계단 및 영업장 내부가 나이트클럽 손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결 구조로 되어 있다.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내부통로 벽면에 「춤추러 가는 곳」이라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.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장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객실에 해당한다'고 판단하였다.

(마) 피고는 2016. 5. 30. 현장조사 시 지하 2층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이 사건 영업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「1층 룸 올라가는 계단」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.

(바) 이 법원의 2017. 4. 21.자 현장검증결과,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노래주점과 지하 2~4층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전용 외부 출입구는 구분되어 있고, 위 노래주점과 이 사건 영업장은 미닫이 유리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,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지하 2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에는 미닫이 유리문이 설치되어 출입금지 표시를 해둔 곳이 있다. 이 사건 영업장에는 12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이용가능한 곳도 일부 있으나 노래방 기기 등 장비가 손상된 객실, 의자와 집기 등을 쌓아놓은 객실도 있다. 「춤추러 가는 곳」이라는 종전의 안내문은 제거되었고, 「1층 룸 올라가는 계단」이라는 안내문 대신 같은 위치에 「H 가는 길」이라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~10, 18호증, 을 제1~17호증의 각 기재, 증인 I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일부 증언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(2) 이 사건 영업장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

(가) 관련 법리

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,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,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,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·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(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82 판결,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).

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(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922,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),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취지가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(헌법재판소 2003. 12. 18. 선고 2002헌바16 결정 참조), 취득세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.

(나)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영업장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5. 6. 1. 당시 나이트클럽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1) 이 사건 영업장의 사업주인 원고 B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주인 원고 A는 부부로서 2013년 이전까지 이 사건 영업장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.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에 가까운 2015. 8. 12. 당시에도 이 사건 영업장에는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12개의 객실에 노래방 시설, 소파, 탁자 등을 구비해두고 있는 등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상당히 유사한 내부 구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다. 또한 이 사건 영업장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 전용 출입구로 나가지 않아도 상호간 이동이 자유로웠으며,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이동경로 벽면에 「춤추러 가는 곳」이라는 알림판이 부착되어 있었다. 이와 같은 영업장의 구조, 시설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을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.

2) 그 이후인 2016. 5. 30.에도 이 사건 영업장의 현황에는 특별한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,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이 사건 영업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「1층 룸 올라가는 계단」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 이 사건 영업장이 여전히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일부임이 표시되고 있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3) 또한 위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장을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켰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(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).

4)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장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나이트클럽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.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장을 나이트클럽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고 일부 공간을 노래주점의 영업장으로 활용하였더라도, 이 사건 영업장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누113 판결 등 참조).

5) 이 사건 영업장 중 창고, 조리실, 직원 휴게공간 등은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서 위 영업장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, 창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영업장 전체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문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판사 백효민

판사 최승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별지

관계 법령

구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(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(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, 별장·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.

4. 고급오락장: 도박장, 유흥주점영업장, 특수목욕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. 다만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11조(세율)

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2. 건축물

가.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)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지방세법 시행령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18

제28조(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)

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.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.

4.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(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)

가.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(카바레·나이트클럽·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)

제119조(재산세의 현황부과)

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. 끝.